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심현정 의원)

의안 번호	461
----------	-----

발의연월일: 2022년 03월 14일

발 의 자 심현정 의원

찬 성 자 박찬원, 지광천, 장문혁의원

1. 제안이유

조례안은 우리군 인구절벽에 따른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수, 군민의 책무(안 제2조 ~ 제3조)
- 나. 군수의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안 제4조)
- 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 수립(안 제5조)
- 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7조)
-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8조~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2. 03. 02. ~ 2022. 03. 11.(9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2. 02. 17.~ 2022. 02. 23. 아래표 참고.

조례안	제출 의견(가족복지과)	의회 의견
<p>제4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군수는 <u>취업여성</u>의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군수는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있는 <u>부모</u>가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수정사유 :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과 의무이므로 “취업여성” 문구를 “부모”로 정정</p>	<p>【수용】</p>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군수는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있는 부모가 직장 일과 가정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 수립) 군수는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머물고 싶은 곳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생애주기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세워야 한다.

1. 청장년고용 촉진 및 청장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한 정책
2. 남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어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정책

4. 임신·출산·결혼·보건·교육 지원 정책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① 군수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저출산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및 교육·일자리·보건·주거 분야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저출산 대책 등에 관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 관련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정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의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

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⑤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의회 심현정의원
연락처	(033) 330 -2504